

장애학생 지원센터규정

제정 : 2015.06.17

개정 : 2018.09.13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개정 : 2024.03.01

개정 : 2025.03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설치된 대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(이하 ‘센터’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5.03.01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“장애학생” 이라 함은 대학생들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저하된 학생과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학생을 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2. “교육복지” 라 함은 장애학생의 대학생들 지원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4조(교수학습지원) 본 대학교는 장애학생에게 교수학습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권고
2. 도우미 배정
3. 교수학습 기자재 대여
4. 강의실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강의실 변경 조치

제5조(편의시설 및 이동지원)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 편의시설 및 이동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학생 편의시설에 관한 요구 개선
2. 장애학생의 교내 이동지원 및 이동보조 도구의 대여
3. 장애인 편의시설의 조사 및 공개

제6조(업무) ①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
2. 장애학생에 대한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
3.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관리
4. 장애학생의 취학편의 및 정보접근 지원
5. 장애학생 상담
6. 교직원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<개정 2025.03.01.>
7. 장애학생 교육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
8. 장애학생지원센터위원회(특별지원위원회) 운영에 관한 사항
9.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⑤ 센터에 관리직원 및 특수교육 전공자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교육 지원인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5.03.01.>

⑥ 센터의 중요한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7조 (특별지원위원회) ①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1.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운영 계획
2.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
3. <삭제 2025.03.01.>
4. <삭제 2024.03.01.>
5.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.09.13., 2020.03.01., 2023.10.16., 2025.03.01.>

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간사 1명은 둔다.

④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4.03.01.>

제8조(배상책임) 제4조제3호 및 제5조제2호의 학습기자재 및 이동보조 도구를 대여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는 장애학생이 배상책임을 진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9조(재정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보조금, 대학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